

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서

장남진치과의원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는 성북구 관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“갑” 은 “을” 을 통해 추천받은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 및 범위)

1. “갑” 은 “을” 이 추천하는 대상자를 지원한다.
2. “을” 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과 같은 대상을 추천한다.
 - 가. 기초생활 수급자 · 차상위계층 등
 - 나. 기타 성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계층
3. 지원범위 : 진단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
4. “을” 은 지원자격 및 범위를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기간)

협약체결일로 부터 “갑” 또는 “을” 중 별도의 중단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된다.

제4조(협력사항)

1. “을” 은 의료진료 대상자를 “갑” 에게 추천한다.
2. “갑” 은 사전에 “을” 과 인원수 및 추천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.

제6조(지원결과 통보 등)

“갑” 은 대상자의 지원결과 내용을 “을” 에게 통보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)

1. 본 협약은 “갑” 과 “을”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.
2. “갑” 은 “을” 이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.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의료 관련 법규 위배 등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사항)

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준수)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쌍방이 서명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, 본 협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2015. 4 .

“갑” : 장남진치과의원장

“을” :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장 남 진 (인)

김 영 배 (인)

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서

미래치과의원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는 성북구 관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“갑” 은 “을” 을 통해 추천받은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 및 범위)

1. “갑” 은 “을” 이 추천하는 대상자를 지원한다.
2. “을” 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과 같은 대상을 추천한다.
 - 가. 기초생활 수급자 · 차상위계층 등
 - 나. 기타 성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계층
3. 지원범위 : 진단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
4. “을” 은 지원자격 및 범위를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기간)

협약체결일로 부터 “갑” 또는 “을” 중 별도의 중단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된다.

제4조(협력사항)

1. “을” 은 의료진료 대상자를 “갑” 에게 추천한다.
2. “갑” 은 사전에 “을” 과 인원수 및 추천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.

제6조(지원결과 통보 등)

“갑” 은 대상자의 지원결과 내용을 “을” 에게 통보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)

1. 본 협약은 “갑” 과 “을”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.
2. “갑” 은 “을” 이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.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의료 관련 법규 위배 등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사항)

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준수)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쌍방이 서명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, 본 협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2015. 4 .

“갑” : 미래치과의원장

양 기 영 (인)

“을” :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김 영 배 (인)

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 협약서

빈센트치과의원(이하 “갑” 이라 한다)과 서울특별시 성북구(이하 “을” 이라 한다)는 성북구 관내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한다.

제1조(목적)

“갑” 은 “을” 을 통해 추천받은 대상자에게 적절하고 필요한 진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지역의 의료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지원자격 및 범위)

1. “갑” 은 “을” 이 추천하는 대상자를 지원한다.
2. “을” 은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중 다음과 같은 대상을 추천한다.
 - 가. 기초생활 수급자 · 차상위계층 등
 - 나. 기타 성북구청장이 인정하는 저소득계층
3. 지원범위 : 진단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전액
4. “을” 은 지원자격 및 범위를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.

제3조(지원기간)

협약체결일로 부터 “갑” 또는 “을” 중 별도의 중단의사 표시가 있을 때까지 계속 된다.

제4조(협력사항)

1. “을” 은 의료진료 대상자를 “갑” 에게 추천한다.
2. “갑” 은 사전에 “을” 과 인원수 및 추천시기 등 세부사항에 대한 협의를 한다.

제6조(지원결과 통보 등)

“갑” 은 대상자의 지원결과 내용을 “을” 에게 통보한다.

제7조(협약의 해지)

1. 본 협약은 “갑” 과 “을” 쌍방의 합의가 있을 때까지 그 효력을 갖는다.
2. “갑” 은 “을” 이 본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.
3. “갑” 과 “을” 은 의료 관련 법규 위배 등 본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,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.

제8조(기타사항)

이 협약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
제9조(협약의 준수)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통을 작성하여 “갑” 과 “을” 쌍방이 서명하여 각 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하며, 본 협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상 양측의 의견이 다를 경우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한다.

2015. 4 .

“갑” : 빈센트치과의원장

김 태 현 (인)

“을” :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

김 영 배 (인)